

서울 속으로 한발 더!  
시민 곁으로 한뼘 더!

## 의원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의 장



2018. 4.

서울특별시의회  
(의사담당관)

# 의원 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접수의안

| 연 번  | 의 안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요 내 용  | 발의·제출<br>(소관위원회)          | 비 고<br>(발의일)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2474 | 서울특별시<br>사회성과보상사업<br>운영 조례<br>일부개정조례안 |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업무(기획, 운영, 보상체계 수립 등)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일원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에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<br>-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상사업에 대한 <u>사전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기관을 총괄부서(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)로 일원화(안 6조)</u><br>-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전문적·효율적 수행을 위해 <u>서울연구원</u> 에서 SIB 기획, 타당성 분석, 보상체계 수립 등 업무 추진(안 16조) | 조상호<br>의원 외 16명<br>(기획경제) | 2018.<br>4.4. |

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

붙임 : 관련 의안 각 1부. 끝

